

기 관 명

수신자

(경유)

제 목 **오염총량초과과징금** [] 조정 부과 통지서
[] 환급

「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6조의7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16제2항에 따라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을 []조정 부과, []환급함을 알려드립니다.

이 통지서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「행정심판법」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「행정소송법」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

통지내용		[] 조정 부과 [] 환급				
계	부과금	미수 부과금	[]조정 부과금 []환급금	[]조정부과금 []환급 결정일	[]납부 은행 []환급 및 계좌번호	기 타

사 유 ([] 조정 부과 [] 환급)

납부통지서 코드번호:

※ 작성방법

- 수신란에는 [] 조정 부과 [] 환급 대상 사업자(납부의무자)의 업체명, 대표자 성명, 업체 주소를 적습니다.
- 사유란에는 [] 조정 부과 [] 환급 사유를 간략하게 적습니다. 끝.

발 신 명 의

직인

기안자 직위(직급) 서명

검토자 직위(직급)서명

결재권자 직위 (직급)서명

협조자

시행 처리과-일련번호(시행일자)

접수

처리과명-일련번호(접수일자)

우 주소

/ 홈페이지 주소

전화()

전송()

/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/ 공개구분

210mm×297mm(일반용지 60g/m²(재활용품))